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. 11. 20 선고 2024가단6246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1. 6.

판 결 선 고 2024. 11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주거시설 23㎡를 인도하고,
나. 2024. 2. 7.부터 가항 기재 선내 ① 부분 주거시설 23㎡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3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단, 1회 변론기일에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기산일을 2024. 2. 7.부터로 감축하였다)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)

판사 이유빈

별지